

의안번호	제556호
의결 연월일	2013년 월 일 (제325회)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재종 의원 외 6명
발의연월일	2013년 10월 31일

#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재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5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10월 31일  
발의자 : 김재중, 이광진, 김종필,  
강현삼, 김영주, 박문희,  
임현경 의원

## 1. 개정이유

「하천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조정 변동사항을 반영하고, 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2조, 제3조)

-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⇨ 5퍼센트 이상 증가

나.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을 반영한 용어 순화 등(안 제5조, 제6조,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5. 관계법령 : 붙임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7. 관련부서 협의 :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
8. 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 (13. 9. 26. ~ 10. 16.)

##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”를 “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천법」 제37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, 토석, 모래·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, 변상금,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,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,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·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37조제4항”을 “제3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”를 “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제3항 중 “잔액에 대하여는”을 “잔액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하며, “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”을 “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 징수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사력을 허가량 만큼”을 “모래·자갈을 허가량만큼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충청북도세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도세 조례」”로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천 법」 제37조제4항에 따라 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하천 법」 제37조,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, 토석, 모래·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, 변상금,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, 제58조 의 하천수 사용료, 그 밖에 하 천사용료의 부과·징수 및 감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① 「하천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제4항에 따른 점용 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②·③ (생략)</p>	<p>제2조(점용료 등의 산정기준) ① ----- -- 제37조제1항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점용료 등의 조정) 영 제42 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 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으로 한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	<p>제3조(점용료 등의 조정) ----- ----- -----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 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 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 하여야 ----. 다만, 골재 채취</p>

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·②  
(생략)

③ 골재 채취료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제2조제1항의 별표 1 제5호에 의한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,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.

④ (생략)

⑤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제6조(점용료 등의 반환)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법 제70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점용료 등의 징수) ①·②  
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 잔액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않은 -----  
----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방세 징수-----.

제6조(점용료 등의 반환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석 및 사력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9조(준용) 요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충청북도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3. -----  
--- 모래·자갈을 허가량만큼  
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준용) -----  
-----  
----- 「충청북도세 조례」-----.



## 관 계 법 령

### [하천법]

제37조(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)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, 그 밖의 하천사용료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사유(私有)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 제1항제1호·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에 있어서 국가하천의 경우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그 하천을 유지·보수하는 때에는 해당 시·도지사를 그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으로 본다.

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공용·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

2.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

3.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**제50조(하천수의 사용허가 등)** ① 생활·공업·농업·환경개선·발전·주운(舟運)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9.4.1, 2013.3.23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4.1, 2013.3.23>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4.1, 2011.4.14, 2013.3.23>

1.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2.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·군관리계획,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
3.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

4.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-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9.4.1, 2013.3.23>
- ⑤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⑥ 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「지하수법」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⑦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.
- ⑧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.
-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# [하천법 시행령]

- 제42조(점용료등의 징수)**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(이하 "점용료등"이라 한다)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②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(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

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는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  
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 
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4.10>

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비해 5퍼센트  
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  
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 
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2.20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 
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**제43조(변상금의 징수)** ①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 
(이하 "변상금"이라 한다)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·  
확인한 후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 
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 
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  
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 
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.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 
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 
조례로 정한다.

**제44조(점용료등의 감면)** ①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"공용·공공용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
2.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(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
3.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·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
5.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경우
6.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

②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전기공급 시설·전기통신시설·송유관·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
③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전액 면제
2.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2분의 1 감면
3. 법 제3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

**제57조(하천수사용료의 징수)**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

(이하 "하천수사용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 <개정  
2009.11.16, 2013.3.23>

1. 발전용수: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
  2. 농업용수: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
  3.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(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): 「한국수자원  
공사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
  4. 그 밖의 용수: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
-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